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6392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등]

재판경과

광주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86392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14 선고 2020가단5672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영

피고, 피항소인 1. B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 김지권

2. C

변론종결 2024. 7. 17.

판결선고 2024. 9. 11.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 9. 14. 선고 2020가단56729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B종중(이하 ‘종중’이라고만 한다)은 전남 무안군 D 대 1,3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20. 9. 21. 접수 제25689호로 마쳐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무안등기소 2020. 9. 21. 접수 제2569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인 ‘A종중(대표자 H)’은 1985년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는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1985년의 A종중과 원고가 실체적으로 동일한 종중임이 증명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임이 증명된 것이다. 1985년의 A종중과 원고는 모두 망 F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동일한 단체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1985년 당시 종중의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가 되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전의 명의인 망 F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구할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망 F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속인의 일부가 소유권의 방해배제를 구하는 의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인 ‘A종중’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관리할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가 없는 단체 명의로 한 등기로 무효인 등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 이후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원고가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인 ‘A종중’의 동일성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종중은 비법인사단으로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단체이므로 망 F의 상속인들이 원고의 구성원이라고 하여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를 원고가 행사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수진, 판사 이미주, 판사 김연경